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2. 1. 5.>

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	사업자명	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	법인등록번호	사업자등록번호

납부내역	납부통지서 발행번호	
	부과일시	납부일시
	납부금액	

반환신청 내역	승인사업명	승인금액
	반환신청액	

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.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.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.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.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.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·인수서(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처 리 절 차

신청인	처리기관 환경부
신청서 작성 ▶	접수
	▼
	검토
	▼
	현지확인 (필요시)
	▼
통보 ◀	결재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